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중국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
2.	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시장규제국(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국)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
3.	조항 2.9.2 [], 2.10.1 [X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	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전기자전거(HS code(s): 871160), (ICS code(s): 43.140)
5.	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,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격(38페이지, 중국어)
6.	내용: 본 문서는 전기자전거의 마킹, 전기자전거 안전, 기계적 안전, 전기적 안전, 화재 및 난연성, 플라스틱 부품의 비율, 베이더우 위치 지정 기능, 통신 기능, 안전 모니터링 기능, 변조 방지 기능, 규격, 기업 품질 보증 역량 및 제품 일관성을 포함하여 전기자전거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을 명시한다. 이 문서는 전기자전거에 적용된다.
7.	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
8.	관련 문서: -
9.	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채택일로부터 6개월
10.	의견 마감일: -
11.	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 중국 WTO/TBT 국가 통보 및 질의처 전화: +86 10 57954633 / 57954627 이메일: tbt@customs.gov.cn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CHN/24_06904_00_x.pdf